**[교회로고]**

# 아동 보호 우려 대응 절차(NSW)

Procedure for Responding to Child Protection Concerns (NSW)

 **[통치기구]에 의해 [날짜]에 승인**

목적 (Purpose)

*아동 보호 우려 대응 절차*(***Procedure* *for Responding to* *Child Protection Concerns****)*(이하, 본 절차)는 모든 형태의 아동 보호 우려에 대한 항의나 관련 정보가 접수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한다. NSW에서는, 아동학대 범죄(Child Abuse Offence),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 아동과 관련된 성적 비행 (Sexual Misconduct) 또는 어린이가 심각한 위해의 위험(Risk of Significant Harm)에 처한 경우가 포함된다.

교회 및 교회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특정 정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주 형법 (NSW-*Crimes Act 1900*), 옴부즈맨법(NSW-*Ombudsman Act 1974*),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NSW-*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및 아동 보호법(*Children’s Guardian Act* 2019)에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 중 일부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게 적용되며, 의무 중 일부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를 NSW 경찰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형사 범죄일 수 있다. NSW & ACT 침례교단은 철저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모든 관련 의무를 다루기 위해 이 절차를 개발했다.

범위 (Scope)

이 절차는 교회의 모든 직원 및 자원 봉사자에게 적용된다.

**항의 내용이나 관련 정보가 절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절차에 명시된 단계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NSW & ACT 침례교단 사역 표준 관리자(1300 647780)에 문의하라.**

이 절차는 안전한 교회 지침 (*Safe Church Policy)* 및 다음의 문서와 함께 읽어야 한다:

* +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 (Procedure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
	+ *교회 안전 우려 양식 (Safe Church Concerns Form)*
		1. **항의 접수 또는 아동 보호 문제 식별(Receiving a complaint or identifying a child protection concern)**

아동 보호 문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아동이 심각한 위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 아동학대 범죄 (Child Abuse Offence)
* 아동이 성학대 (Child Sexual Abuse)
* 아동과 관련된 성적 비행 (Sexual Misconduct involving a child)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심각한 방치
*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행동
* 부적절하게 개인적이거나 친밀한 대화 및 그루밍
* 아동이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 또는 기타 우려되는 이유

아동 보호 관련 항의는 다음으로부터 접수될 수 있다:

* + - 직접적 관련된 아이로부터
		-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인으로부터 (자신의 비행 공개 포함)
		- 아동 또는 성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 아동 또는 성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동이나 성인과 접촉하는 행태를 관찰한 끝에 우려를 같게 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누군가 우려나 혐의를 제기한다면:

* 정보를 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말라.
* 유도 질문을 하지 말라.
* 우려의 타당성을 평가하려고 시도하거나 스스로 혐의를 조사하려고 하지 말라.
* 필요한 경우 제기된 내용을 명확히 하라(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보증하라.
* 그가 어린이라면, 그 어린이에게 잘못이 없으며, 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라.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아동의 안녕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교회 안전우려 양식(the *Safe Church Concerns Form)*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 + 1. **아이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지 고려(Consider whether there is an immediate danger to a child)**

아이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 + 즉시 (131444 또는 000) 경찰에 연락하여 그 정보를 보고한다.
	+ 경찰의 지시를 따른다.
	+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즉각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 불만사항 또는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1. **내부 보고 (Internal Reporting)**

* + - 1. 안전 교회 우려 양식(Safe Church Concern Form)을 작성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아동 보호 염려를 가지고 있거나 이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교회 우려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불만 사항, 연락처 정보 및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 안전 교회 팀(the Safe Church Team)에 통보

*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아동 보호 문제를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안전교회팀에 알려야 한다. 안전교회팀은 교회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우려 사항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안전교회팀에 연락하기 전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4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외부 정부 기관에 자신의 우려 사항을 직접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300 647 780으로 정부 표준 핫라인에 연락하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이 시점에서 고발된 당사자와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조사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제기된 우려가 안전교회팀의 구성원에게 이해 상충을 야기한다면NSW & ACT 침례교단 부처 표준 핫라인(1300 647780)과 연락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1. **교회 외부의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External Reporting to Government Agencies)**
	1. 안전교회팀의 책임

안전교회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필요한 모든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각기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개의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다.
	+ - 모든 정보와 조치를 즉각 상세히 기록한다.
		-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the *Procedures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에 설명된 모든 관련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주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에 중대한 위해 위험 보고(이전 명칭: FACS 또는 DOCS)
		+ 안전교회팀이 중대한 위해의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32 111 또는 전자 보고서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아동 보호 지원 전화(Child Protection Helpline)에 연락해야 한다.
		+ 해당 사안이 중대한 위해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안전교회팀은 https://reporter.childstory.nsw.gov.au/s/mrg에서 의무 신고자 가이드(MRG)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MRG가 '아동 보호 헬프라인에 즉시 보고(Immediate Report to the Child Protection Helpline)'하라는 결과를 내 놓은 경우, 132111 또는 온라인 보고 양식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한다.
		+ MRG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NSW & ACT 침례교단 부처 표준 핫라인(1300 647 780)으로 연락하라.
		+ 안전교회팀은 MRG 보고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1998(NSW)(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NSW))**

**27 의무신고(Mandatory reporting)**

(1)  이 섹션은 다음에 적용된다. —

(a) 전문직업으로 또는 기타 유급직에서 아동에게 의료, 복지, 교육, 아동 서비스, 주거 서비스, 법 집행 등의 업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b)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아동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아동 서비스, 주거 서비스, 법 집행의 직접적 책임 또는 감독을 포함하는 조직의 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c) 종교 지도자 또는 아이들에게 종교에 기반을 둔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d) 심리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심리학자.

(2)  만약—

(a) 본 절이 적용되는 개인이 어린이가 심각한 위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더불어

(b) 그 사람의 업무 과정 중에 또는 업무로부터 그 의심의 근거가 발생한다면,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책임자(the Secretary)에게 어린이의 이름 또는 어린이에 대한 묘사, 어린이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근거를 보고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무이다.

**23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Child or young person at risk of significant harm)**

(1) 본 절과 제3부의 목적상, 만약 다음의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안전, 복지 또는 행복에 대한 현재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그 아동 또는 청소년은 중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a)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b)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그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b1) 교육법([Education Act 1990](https://www.legislation.nsw.gov.au/#/view/act/1990/8))에 따라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지 않거나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c) 아동 또는 청소년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위험이 있는 경우.

(d)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정 폭력의 사건이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 또는 청소년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울 위험이 있는 경우.

(e)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이 심각한 정신적 해를 입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f) 해당 아동이 제25 조에 따라 출산전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으며, 생모는 보고서를 유발 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이러한 상황은 단일 또는 여러 건의 행위이거나 단일 누락 또는 여러 건의 누락일 수 있다.

* 1. 경찰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하기
		+ 안전교회팀이 아동학대 범죄가 저질러졌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대 혐의의 피해자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NSW 경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NSW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요건에는 최근의 사건 및 과거 학대 혐의 모두 포함된다. 교회 안전 팀은 아동학대 범죄의 모든 혐의에 대해 NSW & ACT 침례교단 부처 표준 핫라인(1300 647780)에 통지해야 한다.
		+ 타당한 이유 없이 NSW 경찰에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은폐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변명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합리적인 근거에서) 해당 정보가 이미 경찰에 알려졌다고 믿는 경우.
* 법무부, 옴부즈맨 또는 아동보호국 등 다른 정부 기관에 보고한 경우.
* 피해자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며, 그 사람이 경찰에 정보를 보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경찰에 정보가 보고되는 경우, 피해자나 다른 사람(범인 제외)의 안전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은폐 범죄**

다음의 상황에서 성인이 아동학대범죄를 NSW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형법 316A조(s316A of the Crimes Act)에 따라 아동학대 은폐범죄가 될 수 있다:

* + 아동학대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저질러졌다는 것을 믿거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 NSW 경찰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합리적인 변명'(reasonable excuse)이 없는 경우.

* 1. 아동보호청(the Office of Children’s Guardian)에 보고사안행위(Reportable Conduct) 접수

「아동보호법」 제66조 제(2)항(section 66(2) of the *Children’s Guardian Act 2019)*에 따라 교회는 신고를 담당할 단체 책임자(Head of Entity)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이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유급 원로 목사 또는 교회 관리기구의 의장이다.  책임자는 「아동보호법」 제65조(section 65 of the *Children’s Guardian Act 2019)*에 따라 보고사안행위 법 상 책임을 안전교회팀에 위임할 수 있다.

WWCC (Working With Children Check)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가 보고사안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불만사항이나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보고사안행위 제도(Reportable Conduct Scheme)에 따라 아동보호청(the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에 통보한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 제2절2항(Section 2.2 of the *Procedures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을 참조하라.
*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사안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적임자를 임명한다(*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 제6절(Section 6 of the *Procedures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 참조).
* 보고사안행위 관련 혐의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고사안행위 제도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의 제11절(Section 11 of the *Procedures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 참조)

***2019년 아동 보호법 (Children’s Guardian Act 2019)***

**20 "보고사안행위"(reportable conduct)의 의미**

보고사안행위는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시작되었는지 또는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행위를 의미한다. —

1. 성범죄,
2. 성적 부정 행위,
3.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
4. 아동의 방치,
5. 아동에 대한 폭행,
6. 「형법」 제43B조 또는 제316A조(section 43B or 316A of the Crimes Act 1900)에 따른 범죄,
7. 아이에게 상당한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해를 끼치는 행동.
	* 1. **책임 조치 (Accountability Measures)**

* 1. 최초 고지를 하는 사람에게 통보
		+ 가능한 빨리 (통보 후 48시간 이내), 안전교회팀은 최초 교회 안전 우려 양식 작성자에게 NSW 경찰 또는 아동 보호 핫라인에 보고서 '보고 번호'를 포함한 조치가 취하셨음을 알려야 한다.
		+ 안전교회팀이 NSW 경찰 또는 아동 보호 핫라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초 교회 안전 우려 양식을 작성한 사람은「형법」 제316조(s316A of the *Crimes Act 1900* (NSW)) 또는 의무 보고 법률(the Mandatory Reporting legislation)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직접 NSW 경찰 또는 아동 보호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b) NSW & ACT 침례교단에 보고

아동 보호 문제가 정부 기관에 보고된 경우 교회 안전 팀은 이메일 (standard@nswactbaptists.org.au)을 통해 NSW 및 ACT 침례교단 사역 표준 관리자에게 협회의 기밀 기록에 대한 문제를 알려야 하며 해당 문제가 적절하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 1. **기록 보관 (Recordkeeping)**

교회 안전 우려 양식(The Safe Church Concerns Form), 의무 보고 가이드 보고서(Mandatory Reporters Guide report)(완료된 경우) 및 아동 보호 우려(Child Protection Concern)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의 상세 기록은 모두 최소 45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 1. **조언 및 지원(Advice and Support)**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NSW & ACT 침례교단 사역 표준 관리자(1300 647 780)에 연락하여 조언, 지침 및 지원을 받으라.